

「구미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에 거주하는 만 9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하여 장수어르신에 대한 경로 효친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례 제정을 통하여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한 장수축하금 지급 법적 근거 확보와 어르신 노후 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제정 목적,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장수축하금 지급대상, 지급액(안 제3조~제4조)
- 장수축하금 지급신청, 지급 절차(안 제5조~제6조)
- 지급제외, 환수조치, 대상자 관리(안 제7조~제9조)
- 부칙 : 시행일, 경과조치(안 제1조~제2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노인복지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-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.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장수 어르신께 노후 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며 사회적으로 경로 효친 사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상위법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에 “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” 라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상위 법령에 위배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.